

● 제290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2.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김인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03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인호 의원 발의(찬성 9명)

나. 제출일자 : 2019년 10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가. 최근, 인터넷 등에서 건강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가 난무하고 있음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시민에 대하여 올바른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한 통계와 정보를 토대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시민에 대하여 올바른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진흥법」,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사항 : 개정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 참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인터넷 등에서 건강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가 난무하고 있음. 이에 시장으로 하여금 시민에 대하여 올바른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제안된 안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29조제3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통계와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올바른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9조(건강 통계·정보 관리) ①· ② (생략) <u><신설></u>	제29조(건강 통계·정보 관리) ①· 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한 통계와 정보를 토대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시민에 대하여 올바른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u>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29조제1항은 시장은 시민 건강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시의 건강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안(제29조제3항 신설)은 제29조제1항에 의해 수집된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올바른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근거기반의 과학적인 건강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인터넷의 발전과 시민의 높은 문해력으로 인해 건강정보의 수와 건강정보의 이용 정도는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건강정보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해 제공되고 있거나, 상업적 목적의 건강정보가 제공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 예를 들어 최근 유행하는 식이요법인 ‘간헐적 단식’ 만 하더라도 주요 포털사이트의 질의응답 페이지를 보면 12,871건의 질의 사례가 있으며 관련 전문가인 의사 답변보다는 영양사의 답변, 약사의 답변, 지식파트너(비전문가로 해당 페이지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사람들의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음. 또한 건강관련 정보임에도 식이요법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진 회사가 상업적으로 답변을 다는 경우도 많아 건강정보의 진위를 의심케 하는 경우도 많음.
- “곽금주 교수(서울대 심리학과)는 “일반 국민들이 근거가 없는 건강정보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많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처음부터 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¹⁾ 이에 서울시에 의한 정보제공은 정보의 출처, 정보의 내용, 정보의 질과 같

1)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은 측면에서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할 것임.

3 종합의견

- 건강정보의 홍수 시대에 올바른 건강정보를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시민에게 수익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할 것임. 또한 집행부 의견조회결과 특별한 의견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